

Premium Report 제104호
(2023. 8. 3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계 시사점

 **KICI**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작 성 자 : 김현진 센터장

내용문의 : T - (031) 231-3470 / dualion@kici.re.kr

관련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규

중대산업재해란?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일산화탄소, 납, 유기화합물, 벤젠 등에 노출되어 급성중독, 중추신경계 장애, 혼수상태 등이 발생한 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위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 마련해야함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 유해·위험방지 정책 수립,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관련 예산 편성·집행 관리

** 구성원은 2명 이상,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 하여 총괄·관리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반기 1회이상 점검 후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절차 마련,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후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매뉴얼 준수 여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

이행대상 및 처벌규정

이행대상

-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이행 해야함

✓ 법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사람)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

✓ **경영 책임자**는 해당 사업을 대표, 사무총괄 및 집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

* 통상적으로 법인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시행시기

- ▶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적용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 1. 27 시행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024. 1. 27 시행

* 무기계약/기간제/일용직/파견/사무직/공무원/외국인 근로자.
단,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하는 제3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유형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

구 분	5명 미만	5명 이상 50명 미만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50명 이상 (건설공사 50억원 이상)
개인사업주	법 적용 제외	2024.1.27.부터 적용	
법인 또는 기관		2024.1.27. 적용	2022.1.27. 적용

대응방안

- ▶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법인 또는 기관, 개인사업주 포함)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대응이 필요
-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업체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1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대상 파악

2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위한 체계 구축

3

사후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근거 확보

4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조치 시행

대응방안

1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대상 파악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대상을 확정하고 주요 현황을 파악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사업장의 주요현황 등에 대해 파악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범위 확정

* 사업장 별 업무범위 파악을 위해 사업 관련 계약서 검토 필요

✓ 종사자 수 및 유형 파악(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등)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등의 현황 파악

대응방안

2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위한 체계 구축

> 법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관련 조직내 의무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이행·준수 체계 마련

✓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 검토

✓ 법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체계(조직·인력·예산) 관련 운영사항이 어느정도 필요한지 검토

✓ 용역 및 도급계약서(공사계약, 외주용역 등), 임대차계약 등 검토 후 개선사항 발굴

✓ 사업 및 경영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대응방안

3

사후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근거 확보

▶ 사업장 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행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관련 근거자료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문서 및 필수 작성 양식 검토 후 작성

✓ 구체적인 이행근거(내부결재, 절차서, 매뉴얼 등) 마련 및 보관

✓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한 종합 점검 및 보완

* 안전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안전보건교육 이행, 위험작업 현장감독 등

대응방안

4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조치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한 현장작업 수행을 통해 재해예방 기여

✓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 지급·착용하도록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 지급 등)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조치

✓ 현장작업 전 관련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 안전사고 사전방지를 위해 표준품셈에 따른 안전시설* 및 신호수(유도자) 배치

* 주의표지판, 경광등, 안전유도로봇 등 작업장 20m이내 설치

결론

-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법사항이 있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사전에 산업안전에 관한 예방효과를 두기 위한 법규
- ▶ 다만,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전에 법 이행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24. 1.27일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한 법에 적용됨

시사점

- ▶ 급변하는 ICT 환경속에 인프라 구축을 전담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사업형태 및 종사자수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가 상이하고 영세한 사업장이 다수이기에, 해당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할 수 있는 **지원환경 조성**이 필요
- ▶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체 사업주들의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법 이행에 대한 준비와 대비책이 잘 마련될 수 있는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도록 법 개정 추진, 한겨레신문(2023).

1. 고용노동부 (2022),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2022.3.
2. 대한산업보건협회(2021),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2021.2.
3. 대한상공회의소(2022),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2022.1.
4. 한겨레신문(2023), '국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 추진', 2023.9.
5. 한국경영자총협회(202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경영 가이드북', 2021.12.
6.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02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매뉴얼', 2022.6.
7.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2023),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2023.1.